

예 산 총 칙

2006년도 [1 회추경]

* 제1조 : 200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 계	282,338,940	8,470,168
일 반 회 계	235,374,759	7,061,243
특 별 회 계	46,964,181	1,408,925
기 타 특 별 회 계	46,964,181	1,408,925
의료보호기금	673,149	20,194
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815,260	24,458
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	286,720	8,602
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	15,253,822	457,615
당동2지구토지구획정리	10,526,503	315,795
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	11,694,177	350,825
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	937,921	28,138
교통사업	6,745,606	202,368
주택사업	31,023	931

* 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

* 제3조 :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7,400,000천원으로 한다

* 제4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2,353,460천원으로 한다

* 제5조 :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○ 인건비, 반환금기타, 지방채상환 원·리금